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백승아 · 김문수 · 문정복
박은정 · 강경숙 · 최민희
진성준 · 박지원 · 허 영
진선미 · 김 윤 · 이재강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,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,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,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

⑤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(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③ (생략)

직 또는 해촉된다.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